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2년 9월호

### 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투자업규정

나. 금융위원회 ombudsman 운영규칙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

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라. KSM 운영지침

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
## 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공모펀드 운용 · 판매 책임성 강화 및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)

## 1. 법률\*

##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2/8/30 개정 · 시행)

## 1) 개정 이유

-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-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· 환매 시 기준가격 조정(제77조 제1항 제6호 및 제255조 제1항 제3호 신설, 제77조 제2항)
  -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예금에만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또는 환매할 때 금전 등의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하도록 함
    - (기존)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에 산정되거나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
    - (개정)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 또는 환매
- 외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허용(제80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, 제241조)
  - 국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등의 외화 중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허용
  -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해당 외화를 발행한 외국정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해서는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
  -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부실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일정기준 이상 되지 않으면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· 설립하거나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위탁받지 못하도록 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-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이 1천5백억원 이상
-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이 2천5백억원 이상

□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 완화(제88조 제1항 제3호 삭제)

- 집합투자업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기준지표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

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공시 의무 완화(제118조의16 제3항)

-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

□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추가(제209조 및 제211조 제2항)

- 집합투자업 등으로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계획을 수립·제출하도록 함
  - 집합투자기구의 설정·설립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-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다른 집합투자기구 대비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새로운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함

□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(제243조 제3항)

-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·보수와 수수료·보수별 차이점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함
  - 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기간에 따라 비용상 유리한 판매보수·수수료 수취방식(클래스)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자는 펀드 투자 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 및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% 편입 허용 등)

나.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(옴부즈만 직무범위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 포함)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\*

## 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2/8/30 개정·시행)

## 1) 개정 이유

-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성과보수 제도 개선, 집합투자업자의 자기 재산 투자 등에 고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-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% 편입 허용(제4-52조)
  - (기존) 요건을 갖춘 주식형 ETF의 경우에만 재간접 펀드의 100% 투자를 허용
  - (개정) 채권형 ETF가 30종목 이상의 분산투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간접 펀드의 채권형 ETF 100% 편입을 허용
    - 투자성평가 검증된 채권형 ETF(피투자펀드)를 일대일로 담은 재간접 공모펀드(투자펀드, ETF 포함) 출시 가능
- 성과보수 펀드 및 고유재산 투자펀드의 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 연장 및 수시공시 합리화(제4-54조의2)
  -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과보수 펀드(공모펀드)와 고유재산을 일정액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함
- 지수연동 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종목 투자 규제 합리화(제4-57조)
  -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연동 펀드 운용시 지수 내 포함된 개별회사 주식의 비중 제한(30%)을 합리화하여,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특정 지수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수 내 비중만큼 취득 가능하도록 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□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(제4-65조)

-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공모펀드의 운용성과에 연동하는 보수(성과보수)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
- 기존 성과보수 수취방식(별도 성과보수 방식)과 함께 정기적(분기/반기별)으로 기준지표(벤치마크)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,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(+, -)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을 도입
  -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서는 고유재산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상 인센티브(유인)를 부여함으로써 성과보수 펀드 도입을 촉진
  - (인센티브) 자산운용 비율 규제(투자자산별 투자한도) 위반시 준수기한 완화(3개월→6개월),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완화(1년→2년)

## □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제도 법규화(제7-1조의2 및 제4-63조)

- 공모펀드 등록시 자산운용사가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등록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펀드는 등록 즉시 사전 투자계획에 따른 자기재산 투자를 이행하도록 규정

## □ 소규모펀드 정리 촉진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(제7-1조의3, 제7-4조 및 제7-8조)

- 소규모펀드 정리 촉진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하여 소규모 펀드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
  - 소규모펀드는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
  - 소규모펀드 비율이 일정수준(5%)을 넘는 경우, 신규펀드 출시 제한
- 소규모 펀드 정리에 관한 사항을 투자규약에 사전에 반영한 경우 펀드의 전환 및 신탁계약 해지를 원활히 하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

## □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의 규제 합리화(제7-8조의3)

- 투자전략 변경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만 할 수 있어, 장기 비활동성 펀드의 개편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
- 장기 비활동성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펀드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는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이사회 의결로 투자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
  - 비활동성 펀드란, 10년 이상 경과된 펀드로서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

## □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(제7-16조, 제7-16조의2, 제7-17조, 제7-19조, 제7-36조)

-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화MMF가 도입됨에 따라 외화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자산 및 그 밖에 외화MMF의 운용 규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

□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추가발생 사유(제7-21조)

-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에게 보유비율에 따른 추가발행의 우선매수기회를 부여
- 추가발행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환매금지형 펀드의 추가적인 증권발행이 가능
  - 집합투자업자는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펀드에 한해 기존 투자자 외 다른 투자자에게도 매수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

□ 혼합형 ETF의 편입자산 규제 합리화(제7-26조)

- 혼합형 ETF에 대해 지수 구성종목을 자산 유형별 구분 없이 주식 및 채권을 합하여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제를 합리화
- (기존)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는 기초지수 구성을 위한 종목이 10종 이상이면 가능하나,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혼합형 ETF 지수 구성시 어려움이 있었음
- (개정) 주식·채권 등 자산 유형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 ETF 지수를 구성하도록 규제 완화함으로써 혼합형 ETF 출시 자율성 및 다양성을 제고
  - 예시) 주식 9종 + 채권 1종, 주식 1종 + 채권 9종, 주식·채권 각 5종

□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의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 확대시 관련 절차 규정(제7-58조)

-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국내투자자의 전원 동의 절차가 필요
  - 해당 전환신청서에 국내투자자 전원 동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매 절차 없이 전환 등록을 허용

□ 정책금융기관인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(제7-41조의14)

- 정책금융기관이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의 확인을 받아 경영참여 목적 외의 방식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,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 합리화된 운용규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

## 나.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(2022/8/29 개정·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포함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-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 포함(제5조 제1항 제6호)
  - 옴부즈만의 감시 및 평가 대상에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을 추가하여 옴부즈만이 제3자의 시각에서 정책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근거 마련)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사항 정비)
-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신설 및 규정 정비)
- 라. KSM 운영지침 (코스닥·코넥스 시장 상장예정 등록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사유 추가)

## 3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2022/8/26 개정 · 2022/8/31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품 다양화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증권을 도입하기 위함
  - ‘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’(금융위, 2021.1.29.) 중 ETF 상품 다양화를 위해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허용

#### 2) 주요 내용

-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근거 마련(제113조)
  - 신규상장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집합투자계약에서 존속기한을 별도 기재한 상장지수펀드증권이 세칙에서 정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을 허용
    - 채권형(채권파생형 포함) 상장지수펀드증권(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)
- 상장지수펀드증권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시, 거래소의 예고 및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 의무 신설(제117조 제155조)
  - 거래소는 존속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상장폐지를 예고
  -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사항을 그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 신고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2/8/30 개정 · 2022/8/3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 도입 관련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
  -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사항 일부 정비

### 2) 주요 내용

-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범위 및 종목명 내 존속기한 표기 방식 신설(제92조의2, 별표 2의3)
  -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내 펀드 분류체계 상 채권형(채권파생형 포함) 상장지수펀드증권에 한해 허용
  -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종목명에 존속기한(연도와 월) 표기
-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사항 정비(제96조)
  -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총액의 1% 초과한 종목을 교체한 경우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사항에서 제외

##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2/8/26 개정 · 별도 시행)<sup>1)</sup>

### 1) 개정 이유

- 주식시장 급락 등 시장 충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공매도 거래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하여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신설하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신설 및 규정 정비(제24조의3 제2항)
  - 공매도 거래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추가하락율 및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다소 낮더라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 신설
    - 공매도 거래비중 30% 이상, 추가하락률 3% 이상,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

1) 이 세칙은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- 공매도 과열종목 호가제한 기간 연장(제24조의3 제3항)
  - 차입공매도 호가제한 당일의 주가하락률이 5% 이상인 경우 차입공매도 호가제한 기간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자동 연장

### 3) 관련 규정 개정

-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(2022/8/26 개정)
  - 제8조의5 제2항, 제3항
    -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-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(2022/8/26 개정)
  - 제14조 제2항, 제3항
    -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## 라. KSM 운영지침 (2022/8/23 개정 · 2022/8/24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코스닥 · 코넥스시장 상장예정인 등록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 등록법인 상장 시 원활한 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함
  - 주식양도제한 관련 확인서 서식을 추가하여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
  -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명시하여 제출서류 목록을 실무적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함

### 2) 주요 내용

- 등록취소 사유 추가(제6조 제1항 제4호)
  - 등록법인의 코스닥 · 코넥스 시장 상장을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
- 주식 양도제한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추가(별지 제2호)
  - 등록법인 주식에 양도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서식 추가
- 등록신청 서류 구체화(제4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)
  - 실무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을 등록 신청 서류에 추가하고, 해당 조항 순서 등 정비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소규모펀드 공시 양식 개정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2/8/30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(2022.8.30.)등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관련 공시서식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소규모펀드 공시 양식 개정(별제 제8호)
  - 제도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펀드 비율 공시 양식 삭제 등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